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97호

2019년 10월 11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1 7 5 3 호 남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2
- 공 고 제 1 7 5 6 호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8
- 공 고 제 1 7 7 4 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16
- 공 고 제 1 7 7 5 호 일반게임제공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18
- 공 고 제 1 7 7 9 호 불합리한 과태료 조항 정비를 위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1
- 보 건 소 공 고 제 7 4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32
- 보 건 소 공 고 제 7 5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33

고 시

- 고 시 제 1 3 0 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명:간석동 416-1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사업 실시계획 고시 34
- 고 시 제 1 3 1 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명:새말소공원 조성사업】사업 실시계획 고시 36
- 고 시 제 1 3 2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38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19-1753호

「남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0. 5.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남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안 제2조)
-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090, FAX 453-205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 제10조, 제13조

남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9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남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안 제2조)
-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안 제3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 제10조, 제13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남동구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적극 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지원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19-1756호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0. 07.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의 지정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규정하고자 함.
- 일정 규모 미만의 시설물 소유자·관리자가 자발적으로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 개정내용

- 개방화장실 지정대상 규모를 완화하고자 단서조항 신설(안 제12조제1항)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미만의 시설물이라도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설수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0. 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환경보전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환경보전과

○ 연 락 처 : ☎ 453-2342, FAX 453-2609

마.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5. 참고자료

○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조문대비표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9년 10월 일

제 출 자 :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방 화장실의 지정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규정하고자 함.
- 일정 규모 미만의 시설물 소유자·관리자가 자발적으로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 개방화장실 지정대상 규모를 완화하고자 단서조항 신설
(안 제12조제1항)
- ➡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미만의 시설물이라도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설수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제8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령””을 ““영””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이라도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설 수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 <u>시행령</u> "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설치기준) ----- ----- " <u>영</u>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여러 사람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 <u>단서 신설</u> >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 ----- ----- ----- ----- ----- ----- ----- ----- ----- ----- ----- ----- <u>. 다만,</u> <u>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에</u> <u>서 정하는 규모미만의 시설물이</u> <u>라도 해당시설물을 소유하거나</u> <u>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u> <u>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u> <u>에는 시설수준, 접근성 등을 고</u> <u>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개방화장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3.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8. 장례시설: 장례식장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시설(이하 "업무시설"이라 한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업무시설이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시설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1774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안전기준위반) 처분사전통지서반송분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안전기준위반 차량소유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무5224외 1건 (첨부파일 참조)

2. 기 간 : 2019. 10.10.(목) ~ 10.24.(목)

3. 내 용

가. 납부의무자께서는 공고기한 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최고 75%까지 부과되며

다.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가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5)

2019. 10. 10.

남 동 구 청 장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2019년 9월분) 공시송달내역

순번	차량번호	성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위반항목	우편번호	주소
1	**무5224	묘*	2019-09-30	폐문부재	애플럼 LED, 트렁크라인 LED, 후면 유리 LED 설치	21509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무로**번길 ***, ***호 (간석동)
2	**서1017	임*택	2019-10-04	폐문부재	후미등 미인증 LED	21519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번길 ***, ***호 (만수동,***빌)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1775호

일반게임제공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을 위반한 업자(체)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허가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위반내용 참조

3. 법적근거

가. 위반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나. 처분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4. 공고기간 : 2019.10.10.(목) ~ 2019.10.28.(월) (18일간)

5. 청문일 및 청문장소 : 2019.10.28.(월) 18:00까지 남동구청 6층 문화관광체육과
(※ 의견제출 기한 : 2019.10.28. 까지)

6. 위반내용

연번	업종 (등록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비고 (예정처분)
1	일반 게임제공업 (2017-9)	월드 게임랜드	손 O 성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922번길 8, 1층호 (간석동)	사행행위(환전) (2019.04.30.)	허가취소

7. 허가취소 예정일 : 2019.10.29.(화)

8. 유의사항

가. 귀하는 상기 처분 사항에 대하여 공고기한 내 남동구청에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은 직접방문 또는 팩스(032-453-2139)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다만, 정당한 사유로 청문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만일 공고 기간 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허가취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9. 의견제출 및 문의사항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문화관광체육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 전화번호 : (032)453-2143 / 팩스(032)453-2139

2019. 10. 1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허가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19-1779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등 조례를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0. 12.

남 동 구 청 장**불합리한 과태료 조항 정비를 위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우리 구 조례에 있는 불합리한 과태료 조항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의 인용 조문 정비
-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090, FAX 453-205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불합리한 과태료 조항 정비를 위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9년 10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우리 구 조례에 있는 불합리한 과태료 조항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의 인용 조문 정비
-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정비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남동구 조례 제 호

불합리한 과태료 조항 정비를 위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13조**”를 “**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68조제1항제1호**”를 “**법 제68조제3항제3호**”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별표 2**”를 “**영 제38조의4**”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별표 2를 삭제한다.

제2조(「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의 개정)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④ · ⑤ (생략)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
----- 영 제38조의4-----.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2조(「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 <u>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제3항 별표8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부과기준에 의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u>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위 <u>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와 같다.</u>
제21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 <u>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u>	② <u>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u> <삭 제>

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는 위반사실 · 과태료금액 ·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 함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을 말한다.

제22조(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삭 제>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부과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 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과태료의 강제징수) 과태

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

<삭 제>

<삭 제>

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한
다.

제25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
리)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
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
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
·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
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를 준용
한다.

<삭 제>

<삭 제>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9-74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9. 10. 22.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19. 10. 07. ~ 2019. 10. 21.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휴 게 음식점	2013- 0199553	커피하루	조○남	소래역동로 6-11, 1층 (논현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9.09.07	2019.10.22
일 반 음식점	2000- 0199914	영화반점	항○철	논현고잔로88번길 23, 1층 (고잔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9.09.30	2019.10.22

6. 고지사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9. 10. 21.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3

2019. 10. 0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9-75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9. 10. 23.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19. 10. 08. ~ 2019. 10. 22.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일 반 음식점	2011 -0199440	고려왕족발	이○오 (개명:이 ○준)	구월로276번길 8.(구월동 엔덴상가 105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8.09.10.	2019.10.23.

6. 고지사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9. 10. 22.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5

2019. 10. 0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고시 제2019-130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명:간석동 416-1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사업 실시계획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명 : 간석동 416-1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2) 및 교통행정과(☎453-268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9. 10. 1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416-1번지 외 4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명 칭 : 간석동 416-1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A = 555.9m²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0.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지번 (구월동)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416-4	대	137.9	137.9	하○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2	416-1	대	121.7	121.7	배○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3	416-9	대	125.0	125.0	이○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신서○신용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중구 신도시남로 142번길 15	근저 당권	
4	416-8	도	131.6	53.0	남동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			
5	416-12	대	118.3	118.3	안○룡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우○은행 (인천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기	근저 당권	
소 계			555.90							

7. 관계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시 제2019-131호

도시계획시설 【공원, 사업명:새말소공원 조성사업】 사업 실시계획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 【공원, 사업명 : 새말소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2) 및 공원녹지과(☎453-614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9. 10. 1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산36-7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 명 칭 : 새말소공원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A = 4,144.0\text{m}^2$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1.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간석동 산 36-7	임	30,569	4,144	진주강씨 영성군파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000-0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소 계			555.90							

7. 관계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9-132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0. 1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23번길 6-29 외 4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당좌로35번길 18-12 외 1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12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33-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23번길 6-29 (구월동)	20140725	선수촌공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24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9101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선수촌공원로23번길 6-29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6-29를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3-5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28번길 26 (구월동, 다솜주택)	20091116	석산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2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101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석산로228번길 26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6을 건물번호로 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1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28번길 44 (구월동)	20091116	석산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2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101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석산로228번길 44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44를 건물번호로 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154번길 62 (논현동)	20091116	소래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101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소래로154번길 62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62를 건물번호로 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82-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209번길 13-9 (논현동)	20091116	은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10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101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은봉로209번길 13-9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3-9를 건물번호로 부여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15-2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681번길 54 (구월동)	20091116	인주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82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101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인주대로681번길 54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54를 건물번호로 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3-51	인천광역시 남동구 당좌로35번길 18-12 (구월동)	2019.10.10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3-54	인천광역시 남동구 당좌로35번길 18-10 (구월동)	2019.10.10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3-59	인천광역시 남동구 당좌로35번길 18-6 (구월동)	2019.10.10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44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곡로60번길 26-42 (서창동)	2019.10.10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10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22번길 39-6 (구월동)	2019.10.10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3-5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28번길 24 (구월동)	2019.10.10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3-5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28번길 26 (구월동)	2019.10.10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3-6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28번길 28 (구월동)	2019.10.10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1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28번길 46 (구월동)	2019.10.10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28번길 48 (구월동)	2019.10.10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1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28번길 42 (구월동)	2019.10.10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15-2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681번길 54 (구월동)	2019.10.10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